

의안번호	제133호
의결 연월일	201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5년 월 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33호
----------	-------

제출연월일 : 2015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신설되고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
-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시골마을 행복택시”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재정지원의 대상(안 제2조)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신설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재정지원의 대상) ① 1. ~ 2. (생 략) <u>< 신 설 ></u> <u>3. ~ 4.</u> (생 략)	제2조(재정지원의 대상) ① 1. ~ 2. (현행과 같음) <u>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u> <u>4. ~ 5.</u>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4.1.28.>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2.1., 2013.3.2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사업명 :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업비 : 60억원 [4년간 / 도비 18억원(30%), 시·군비 42억원(70%)]
- 사업내용
 - 버스 미운행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에서 읍·면소재지 또는 재래시장 까지 버스 기본요금 정도로 택시 이용
 - 1일 3회 이내 부정기적 운행, 탑승자 부담 이외의 요금은 손실보전

2. 비용 발생 요인

- 탑승자 부담(시내버스 기본요금) 이외의 요금에 대한 손실보전

3. 관련조문

- 안 제2조(재정지원의 대상)제1항제3호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버스 미운행 마을 대상 행복택시 운행
- 탑승자 부담(시내버스 기본요금) 이외의 요금은 손실보전
- 15년 하반기 100여개 마을 → 16년 150여개 → 17~18년 200여개 마을 운행

나. 추계 결과 : 15년~18년까지 향후 4년간 총60억원 정도 소요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30%, 시·군비 7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기 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비	합 계	60	5	15	20	20
	도비	18	1.5	4.5	6	6
	시군비	42	3.5	10.5	14	14
대상마을(개소)			100	150	200	200

6. 작성자 : 균형건설국 교통물류과장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15년)	2차년도 ('16년)	3차년도 ('17년)	4차년도 ('18년)	계
세 입						-
세 출		500,000	1,500,000	2,000,000	2,000,000	6,000,000
추가요금 손실보전		500,000	1,500,000	2,000,000	2,000,000	6,000,000
재원 조달		500,000	1,500,000	2,000,000	2,000,000	6,000,000
의존 재원	소 계					-
	보조금					-
	지방교부세					-
						-
자체 수입	소 계					-
	지방세	150,000	450,000	600,000	600,000	1,800,000
	세외수입					-
						-
지방채						-
기 금						-
특별회계						-
△△특별회계						-
△△특별회계						-
시·군비		350,000	1,050,000	1,400,000	1,400,000	4,200,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